

영등포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9. 5.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9. 5. 21.
- 제안자 : 영등포구청장

■ 개정(제안) 이유

-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5·18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 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 함.(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가목)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함.(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라목)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음.(안 별표 1의 비고 제14호)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음.(안 별표 1의 비고 제15호)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음.(안 별표 1의 비고 제16호)

■ 관련법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공직선거법」 제6조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공영주차장할인 서울특별시방침, 주차계획당관-18111(2008.12.10)

■ 타 자치단체 조례개정 현황

-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로구, 종로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5·18 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 하였으며(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가목)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도록 하였고(안 별표 1의 비고 제6호 라목)
-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별표 1의 비고 제14호)
-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별표 1의 비고 제15호)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별표 1의 비고 제16호)
- 이상과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 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되오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 5. 27.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 법령】

관 련 법 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질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 된 자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자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공직선거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및 시장활성화구역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시장 또는 시장활성화구역 안에 있거나 인접한 것에 한한다)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을 경감한다.